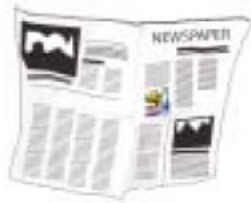




■ 정보제공 매체 사용

Do

- 모든 합법적 매체의 정보제공 용도는 가능



Don't

- 합법적 매체라 할지라도 상업적 사용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후원 등에는 불가



■ 경기스케줄 제공

Do

-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경기스케줄 고지 및 공식마크 사용 가능



Don't

- 상업적 목적의 경기 스케줄 고지 불가



■ 기업명 표시

Do

- 비즈니스 혹은 기업 명칭에 일반적인 축구 및 개최 장소 사용은 가능



Don't

- 비즈니스 혹은 기업 명칭에 공식마크 사용 불가



■ 매장 데코레이션

Do

- 일반적인 축구관련 장식이나 국기 등은 허용



Don't

- 공식마크는 물론, 년도를 포함한 FIFA월드컵을 연상시키는 문구나 이미지가 있는 장식은 불가



■ 머천다이징

Do

- 상품에 일반적인 축구나 국가명, 혹은 이미지는 사용 가능



Don't

- 상품에 FIFA월드컵을 연상시키는 엠블럼, 문구, 슬로건, 이벤트 타이틀, 년도는 사용 불가



■ 인터넷 웹사이트

Do

- URL에 도메인 네임 이후 공식마크의 사용은 가능



Don't

- 콘텐츠 중 고정 석션의 명칭이나 아이콘으로 공식마크 사용 불가



Don't

- 도메인 네임이나 URL에 공식마크 사용 불가



Don't

- MMS/SMS/WAP/모바일 폰 서비스에서 공식마크 및 콘텐츠 중계 사용 금지 (단 뉴스 목적의 정보제공은 가능)



Don't

- 공식마크는 하이퍼링크 용도로도 사용 불가



Don't

- 월페이퍼 디자인 및 기타 다운로드용으로 사용 불가



단체응원시 고려사항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대표 이벤트로 자리 잡은 것이 단체응원(Public Viewing)인데, 단체응원을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FIFA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상업적 행위뿐 아니라 비상업적 행위도 포함된다.

FIFA는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이벤트를 단체응원이라 규정하고, 직간접적으로 입장료를 부과하거나 행사

관련 기업의 프로모션 활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타 상업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업적 행사로 간주한다. 또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경기중계와 관련한 모든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FIFA에 귀속된다.

FIFA는 경기중계를 위한 방송, 보도 사용권과 관련해 라이선스를 신청시 해당 단체응원이 어떤 성격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용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중계는 생방송만 가